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

사건번호

채권자(상대방)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채무자(신청인) (연락처)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채무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○○. ○○. ○○.자로 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이 사건의 감정은 20--. -. --.자 000의 감정평가서입니다.
그런데 등기부등본 및 감정서의 결정에 보면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, 감정평가명세표에 보면 토지 0원이 포함되어 합계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따라서 대지(토지)는 감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로 감정되었으므로, 민사집행법 1)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.

---

1) **제121조(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)**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. 1.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.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.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. 최고가매수신고인,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. 최저매각가격의 결정,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. 천재지변,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.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

※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(대지권등록부)상 대지권(소유권) 미등재 상태임.

토지·건물	배분내역
토 지 :	131,200,000
건 물 :	196,800,000
	₩328,000,000.-

2. 채권자가 20--. -. --. 대위자로 한 대지권의 등기에 보면 별도등기가 있습니다.

이에 별도등기인 480번에 보면, 종전토지에 대한 채권자 000의 청구금액 0원에 관한 접수번호 제----호(20--. -. --)인 00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(20--카단---)이 있습니다. (소갑 제1호증)

그런데 현황조사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.

3. 이에 이의신청으로 민사집행법 2)제123조인 매각의 불허를 구합니다.

소 명 서 류

1.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

20--. -. --.

위 채무자 홍 길 동

00지방법원 귀중

2) **제123조(매각의 불허)**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.